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효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이효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김경훈, 김규남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형재, 남창진, 박철성, 서상열, 서준오, 송경택, 이영실, 이종태, 임만균, 장태용, 최민규, 최윤희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안 제 11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1인”을 “10명 이상 1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<u>21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<u>10명</u> 이 <u>상 15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